

## 급여(상여금) 이체 계약서 (기타 자금이체 겸용)

□ 급여(상여금) - 이하 "제급여"라 한다- 및 □ 기타대금의 은행예금계좌를 통한 이체 거래에 대하여 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와 하나은행 지점 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조 (목적)

본 계약은 "고객"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급할 대금을 "은행"에게 개설되어 있는 "고객"의 모계좌에서 "고객"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자금이체 대상계좌)

"고객"이 지정 할 수 있는 이체대상 계좌는 "은행"또는 다른 영업점 및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이체 가능한 계좌로 한다.

### 제 3조 (이체일)

이체일은 "고객"이 지정한 날짜로 하되, 이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"은행"이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전에 "은행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조 (급여이체(지급) 의뢰서 및 이체명세서의 송부)

"고객"은 본 계약에 의해 제급여 및 자금이체를 실시하는 월부터 법인인감 또는 통장상 인감이 날인된 급여 이체(지급) 의뢰서 및 이체명세서를 이체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"은행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대량이체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이체의뢰명세를 엑셀(Excel)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 추가 제출한다.

### 제 5조 (모계좌 지정)

제급여 및 이체자금이 지급되는 "고객"의 계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예 금 주	계좌 번호	출금계좌 인감

### 제 6조 (업무처리)

- ① "고객"은 이체실행 전까지 이체금액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"고객"의 모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.
- ② "은행"은 "고객"이 의뢰한 명세서 내용대로 처리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금처리하지 않는다. 다만 "고객"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"고객"과 "은행"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.
  1. 입금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
  2. "고객"이 의뢰한 입금계좌의 계좌번호가 "은행"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

